

# 정상가격 산출과 가치창출의 연계 관련 BEPS프로젝트 주요 권고사항 및 국내외 입법동향

2016.09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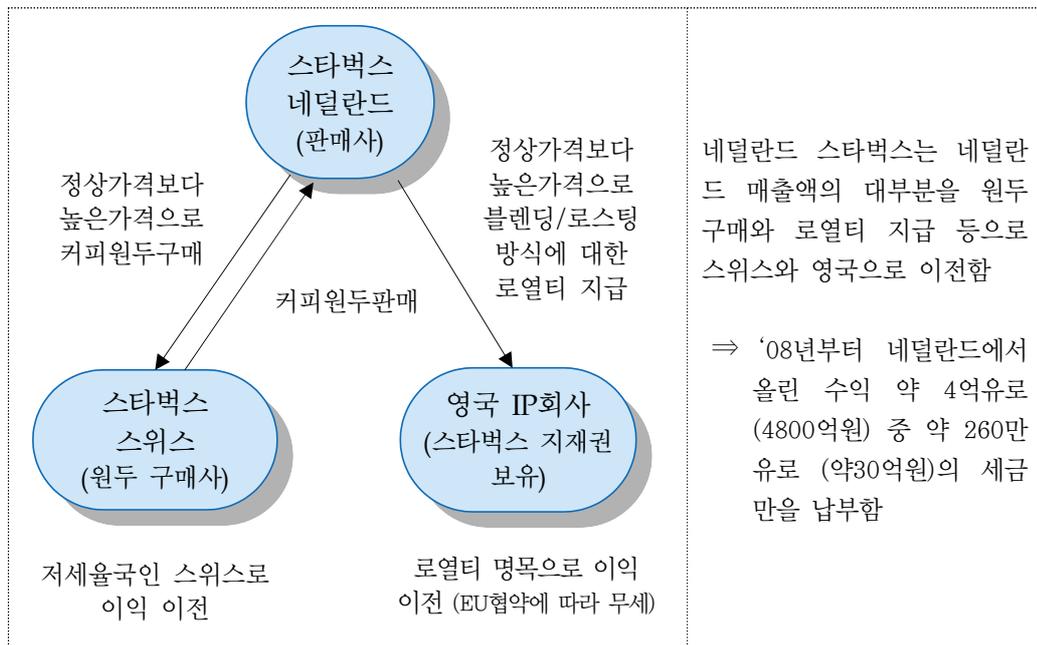
# CONTENTS

<b>01. 도입 배경</b> .....	1
<b>02. 주요 권고사항</b> .....	4
<b>03. 국내 입법동향</b> .....	6
<b>04. 해외 입법동향</b> .....	7
1. 북미 .....	7
2. 유럽 .....	7
3. 아시아/오세아니아 .....	9
4. 해외 입법동향 요약 .....	10
<b>05. 요약 및 시사점</b> .....	11
참고문헌 .....	13

# 01 도입 배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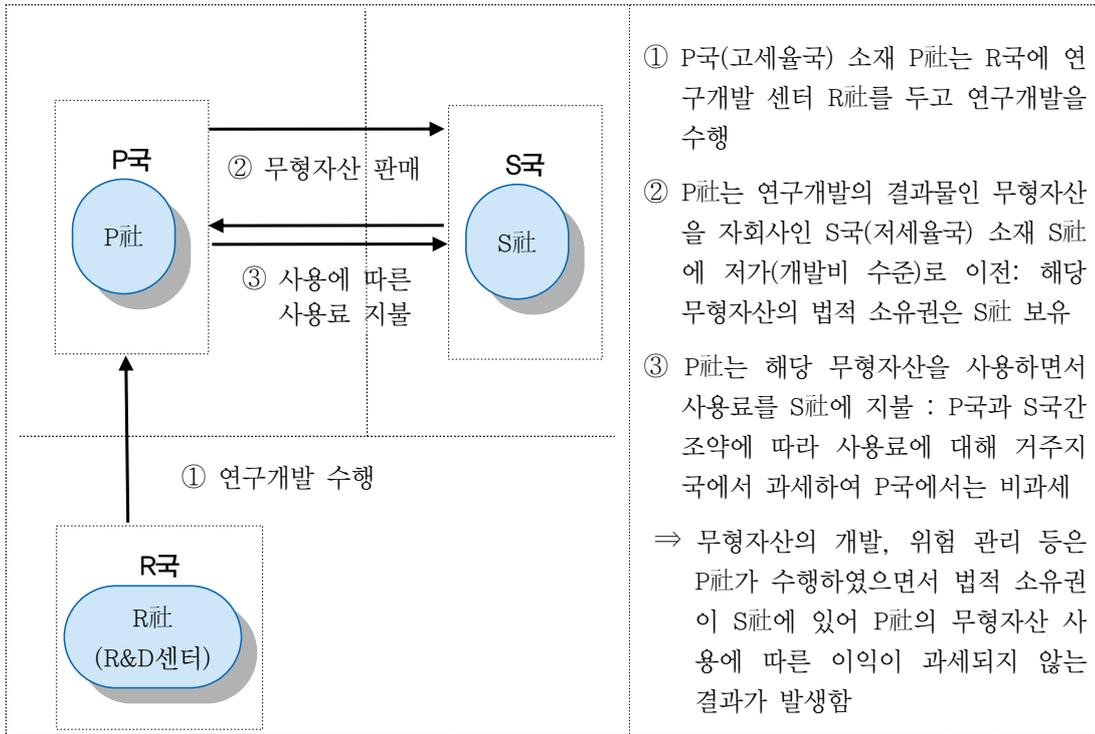
- 전 세계적으로 다국적기업 그룹 구성원간의 내부거래 규모가 크게 증가함은 물론 그 구조도 복잡해짐에 따라 이전가격을 활용한 다국적기업의 국제적 조세회피 행위, 이른바 BEPS(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)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됨
- 다국적기업 그룹 내부거래에서 거래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저세율국으로 소득을 이전하거나, 가치창출 기여도가 매우 낮은 저세율국 소재 관계사에게 무허자산 등의 법적소유권을 이전하고 사용료 등을 지급하는 형태가 대표적인 사례임

## ● 사례1 : 이전가격 조작을 통한 조세회피 사례<sup>1)</sup>



1) 기획재정부 보도자료, BEPS 프로젝트 조치별 대응 방향(Ⅲ) 국제기준의 남용 방지, 2015.11.30.

● 사례2 : 무형자산 이전을 통한 조세회피 사례<sup>2)</sup>



■ Action 8-10<sup>3)</sup>은 이러한 다국적기업의 인위적 이전가격 조작 등을 통한 BEPS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됨<sup>4)</sup>

- Action 8-10은 그동안 전 세계적으로 이전가격 과세지침으로 널리 사용돼오던 기존 OECD 이전가격지침<sup>5)</sup>을 대체 또는 보완하는 것임<sup>6)</sup>
- Action 8-10은 G20 Development Working Group의 후속 작업을 거쳐 개발도상국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 등을 보완할 예정임
- OECD는 이전가격 지침서의 개정을 '17년까지 완료하고, '18년 중반에 개정된 지침서를 발간할 예정임<sup>7)</sup>

2) Ibid

3) OECD, *Aligning Transfer Pricing Outcomes with Value Creation, Action 8-10 - 2015 Final Report*, OECD/G20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Project, OECD Publishing, Paris, 2015.

4) Action 8은 무형자산 거래 관련 이전가격 문제를, Action 9는 계약상 위험부담 및 과도한 자본의 분배에 따른 이전가격 문제를, Action 10은 저부가가치 그룹내부용역 등에 관한 이전가격 문제를 다룸

5) OECD, *Transfer Pricing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and Tax Administrations*, 2010.7.22

6) 이 지침은 1979년에 '다국적기업과 과세당국을 위한 이전가격지침' 으로 발간된 후 1995년과 2010년에 개정됨

7) 기획재정부 보도자료, BEPS 프로젝트 조치별 대응 방향(Ⅲ) 국제기준의 남용 방지, 2015.11.30.

- OECD는 기존 OECD 이전가격지침의 개정에 합의한 국가에 대해 Action 8-10 권고사항 합의내용 반영하여 각국 세법 및 조세조약을 개정할 의무를 부여함
  - 우리나라는 기존 OECD 이전가격지침의 개정에 합의한 국가에 속하므로, Action 8-10 권고사항에 대한 강한 이행의무를 부담함

## 02 주요 권고사항

- Action 8-10 권고사항의 핵심은 경제적 실질에 따른 가치창출 기여도에 따라 다국적기업 그룹 내 구성원 간에 이익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며, 기존 OECD 이전가격지침을 대체 또는 보완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<sup>8)</sup>
  
- 계약상 위험부담은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이 있을 경우에만 인정하며, 계약 관계가 경제적 실질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질에 따라 이전가격 분석을 수행함
  - 기능 분석 시 위험부담 주체를 판단함에 있어 위험에 대한 통제능력과 재무부담능력을 함께 고려하도록 함
  - 과세당국은 특정 거래의 상업적 합리성(commercial rationality)이 결여된 경우 당해 거래를 부인 또는 재구성할 수 있음
  - 과도한 자본을 제공하는 기업에 대해 가치창출에 대한 실제 기여도에 따라 위험조정 보상을 제공해야 함
  
- 공신력 있는 공시가격이 확인되는 원자재 거래의 경우 당해 공시가격을 활용한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이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산출방법이 될 수 있음
  - 과세당국은 납세자가 적용한 가격결정일의 신뢰성을 검증하며, 납세자의 가격결정일이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 선적일자와 같은 이용가능한 자료를 통해 가격결정일을 간주할 수 있음
  
- 정상가격산출방법 중 이익분할방법의 사용이 적절한 상황, 배분대상 이익의 측정, 이익 배분기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적용사례를 제시함<sup>9)</sup>

8) OECD, *Aligning Transfer Pricing Outcomes with Value Creation, Action 8-10 - 2015 Final Report*, OECD/G20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Project, OECD Publishing, Paris, 2015.

9) OECD, "Public Discussion Draft - BEPS Action 8-10 Revised Guidance on Profit Splits," 2016.07

■ 무형자산 관련 거래와 관련하여 법적 소유권과 무관하게 가치창출 기여도에 따른 정상가격 보상을 강조함

- 이전가격 분석 목적상 무형자산으로 정의되기 위한 요건 및 예시를 제시함
- 무형자산 거래 관련 기능 분석 시 위험부담 주체를 판단함에 있어 위험에 대한 통제권 유무와 위험을 부담할 수 있는 재정적인 능력을 함께 고려하도록 함
- 무형자산 거래 관련 정상가격산출방법으로서 현금흐름할인법을 포함한 가치평가방법의 도입을 권고함
- 가치평가가 어려운 무형자산(hard-to-value intangibles)의 경우 사후적 재무정보 등에 의해 사전적 거래가격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함(예외 규정 존재)

■ 저부가가치 그룹내부용역 거래에 대해 간소화된 접근방법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을 제시함

- 저부가가치 그룹내부용역은 회계, 감사, 법률 서비스 등 단순 지원 성격의 용역과 같이 다국적기업의 중요하고 핵심적인 소득창출활동과 관련된 것이 아니고 용역제공자가 중요한 위험을 부담하지 않는 용역을 의미함
- 다만, 본사비용 등에 대한 과도한 대가 지급으로부터 지급국을 보호하기 위해 간소화된 접근방법 적용의 제한기준(threshold)도 함께 제시함
- 간소화된 접근방법 적용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이전가격문서화 및 보고의무를 부여함

■ 원가분담약정의 참여자(participants)를 결정 시 위험 통제 및 재무능력을 고려하여 경제적 실질이 반영될 수 있도록 권고함

- 원가분담약정은 유·무형자산, 서비스를 공동개발하고, 해당 무형자산 등으로부터 편익이 발생할 것이라는 기대하에 비용 등을 분담하는 기업 간의 약정임

## 03 국내 입법동향

- 우리나라는 OECD 이전가격지침의 개정에 합의한 국가로서 Action 8-10과 관련하여 강한 이행의무를 부담함
- 우리나라는 기존 이전가격 지침을 국제조세조정법에 반영하였는바, 개정 지침에 대해 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, 해외 입법 사례 조사 등 검토를 통해 도입 시기를 결정할 계획임<sup>10)</sup>

<sup>10)</sup> 기획재정부 보도자료, BEPS 프로젝트 조치별 대응 방향(Ⅲ) 국제기준의 남용 방지, 2015.11.30.

## 04 해외 입법동향

### 1 북미

■ 미국의 경우 아직 Action 8-10 관련 입법동향이 확인되지 않지만, 국세청의 이전가격 규정 등에 Action 8-10 권고사항 중 일부가 아래와 같이 반영되어 있음<sup>11)</sup>

- 국세청은 이전가격 분석 목적의 무형자산의 정의를 규정하고, 집약된 노동력(assembled workforce) 등의 항목을 무형자산의 종류에 포함할 것을 제안하였으며, 이전가격 분석을 위한 다양한 무형자산 범주<sup>12)</sup>을 제시함
  - 무형자산 정의에 관한 국세청의 이러한 폭넓은 견해는 Action 8-10 보고서에 기술된 무형자산의 범주 등의 내용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임
- 무형자산 가치평가와 관련된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며, 해당 규정에는 현금흐름할인법을 포함한 소득접근법, 시장자본접근법 등의 방법이 제시되어 있음
- 원가분담약정과 관련하여 단순히 자금 제공자 역할만을 수행하는 경우 이전가격 분석 목적상 원가분담약정의 참여자로 인정하지 않음

### 2 유럽

■ 독일의 경우 아직 Action 8-10 관련 입법동향이 확인되지 않지만, 현행 세법 및 이전가격 지침 내에 Action 8-10 권고사항 중 아래의 내용이 반영되어 있음<sup>13)</sup>

-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적용 시 외부가격비교방법은 비특수관계회사 간의 거래가격을 비교하는 것이며, 여기에는 원자재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포함됨
- 세법 규정을 통해 라이선스 사용료 또는 무형자산의 판매와 관련하여 비교가능한 제3자 거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당해 무형자산 거래에 대해 현금흐름할인법에 기초한

11) J.C. Armitage et al., "United States – Transfer Pricing", Topical Analyses IBFD 세법연구센터, 「BEPS 이행관련 국제동향」, 한국조세재정연구원, 2016. 에서 재인용.

12) manufacturing versus marketing intangibles, routine and non-routine intangibles 등

13) H-K. Kroppen & A. Eigelshoven, "Germany – Transfer Pricing", Topical Analyses IBFD 세법연구센터, 「BEPS 이행관련 국제동향」, 한국조세재정연구원, 2016. 에서 재인용.

가치평가를 해야 한다고 규정함

- 이전가격지침을 통해 저부가가치 그룹내부용역에 대한 3~10%(일반적으로 5%) 범위의 markup을 허용한다고 언급함

■ 프랑스의 경우 아직 Action 8-10 관련 입법동향이 확인되지 않지만, 프랑스 과세당국의 행정규정 등에 Action 8-10 권고사항 중 아래의 내용이 반영되어 있음<sup>14)</sup>

- 원자재를 판매하는 기업의 경우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의 사용이 특히 적합하다고 설명함
- 이익분할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정상가격산출방법이 될 수 있는 예로써 제조업자와 유통업자 모두가 가치 있는 무형자산을 가지고 있고 양자 간에 기능 및 리스크 측면에서 중요한 차이가 없는 경우 등을 제시함
- 과세당국은 무형자산 가치평가방법에 관한 지침을 발표했으며, 주요한 평가방법으로서 소득접근방법, 시장접근방법, 원가접근방법을 제시함
- 저부가가치 그룹내부용역에 관하여 관련 원가에 3~10%(일반적으로 5%) 범위 내의 markup이 적절하다는 EU JTPF 지침을 참조함

■ 영국은 2010년 국제조세법(Taxation International and Other Provisions Act) 입법 시 정상가격원칙 적용과 관련하여 OECD 이전가격지침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하였으며, 2016년 중 입법을 통해 BEPS프로젝트 실행에 따른 OECD 이전가격지침 개정사항도 추가로 수용할 예정임<sup>15)</sup>

- 정상가격원칙 적용에 관한 국제조세법의 Action 8-10 개정사항 준용 규정은 2016년 4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효력이 발생함

■ 네덜란드 재무장관은 2013년 11월 칙령 발표를 통해 Action 8-10 권고사항 중 일부를 자국 이전가격 규정에 도입함<sup>16)</sup>

- 무형자산의 법적 소유권자가 무형자산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기능을 수행하거나 위험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 무형자산 관련 제한된 보상만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견해를 표명함

14) P. Escaut, "France – Transfer Pricing", Topical Analyses IBFD. 세법연구센터, 「BEPS 이행관련 국제동향」, 한국조세재정연구원, 2016. 에서 재인용.

15) A.J. Casley, "United Kingdom – Transfer Pricing", Topical Analyses IBFD. 세법연구센터, 「BEPS 이행관련 국제동향」, 한국조세재정연구원, 2016. 에서 재인용.

16) H. van Dam & T. Wiertsema, "Netherlands – Transfer Pricing", Topical Analyses IBFD. 세법연구센터, 「BEPS 이행관련 국제동향」, 한국조세재정연구원, 2016. 에서 재인용.

- 원가분담약정과 관련하여 단순히 자금 제공자 역할만을 수행하는 경우 이전가격 분석 목적상 원가분담약정의 참여자로 인정받기 어려움

### 3 아시아/오세아니아

■ 호주 국세청은 2016-17년 예산안 공개를 통해 OECD 권고사항에 기초하여 이전가격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임을 언급하였으며, 현행 이전가격 규정상에도 Action 8-10의 권고사항이 일부 반영되어 있음

- 이전가격 규정 개정을 통해 지적재산권 및 무형자산 이전 거래와 관련하여 가격 결정 방법을 보다 명확히 정하고, 계약 형식보다 거래 실질을 우선하여 이전가격 분석을 수행하도록 할 것임<sup>17)</sup>
- 2014년 12월 국세청은 그룹내부용역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저위험 거래에 대해 간소화된 정상가격 산출 및 문서화를 허용함<sup>18)</sup>

■ 중국 국가세무총국은 2015년 9월 Action 8-10의 권고사항, 특히 무형자산 관련 OECD 이전가격지침 개정사항을 특별납세조정방법 개정안<sup>19)</sup>에 반영함<sup>20)</sup>

- 이전가격 분석 시 사업상 이점을 가져다주는 지역적 특성(정부산업정책 등으로 발생하는 원가절감 등의 효익)을 고려해야 함
- 무형자산의 유형을 기술 및 시장에 관한 무형자산과 기타의 무형자산으로 구분하고, 마케팅활동의 가치창출 기여도에 대해 강조함
- 가치창출에 대한 실질적인 기여 없이 단순히 무형자산에 대한 법적 소유권만을 가지고 있는 다국적기업 그룹 구성원에 대해서는 무형자산으로부터 창출되는 수익을 배분할 수 없음

17) 호주 국세청, [http://budget.gov.au/2016-17/content/glossies/tax\\_super/downloads/Budget2016-17-Tax-Super.pdf](http://budget.gov.au/2016-17/content/glossies/tax_super/downloads/Budget2016-17-Tax-Super.pdf), 세법연구센터, 「BEPS 이행관련 국제동향」, 한국조세재정연구원, 2016. 에서 재인용.

18) Ibid

19) 중국 국가세무총국, 《特别纳税调整实施办法》征求意见稿, 2015.9.17, 세법연구센터, 「BEPS 이행관련 국제동향」, 한국조세재정연구원, 2016. 에서 재인용.

20) KPMG, <https://home.kpmg.com/content/dam/kpmg/pdf/2015/09/china-sept20-2015secondversion.pdf>, 세법연구센터, 「BEPS 이행관련 국제동향」, 한국조세재정연구원, 2016. 에서 재인용.

## 4 해외 입법동향 요약

표 1 주요국의 Action 8-10 권고사항 입법동향

국가		진행상황		권고사항				
		기존규정	동향	원자재 거래	이익분할 방법	무형자산	저부가가치 그룹내부 용역	원가분담 약정
북미	미국	일부 존재	-	×	×	○	×	○
유럽	독일	일부 존재	-	△	×	△	△	×
	프랑스	일부 존재	-	△	△	△	△	×
	영국	-	논의 중	○	○	○	○	○
	네덜란드	일부 존재	-	×	×	△	△	○
아시아/ 오세아니아	호주	일부 존재	논의 중	×	△	△	△	×
	중국	-	논의 중	×	×	△	×	×

## 05 요약 및 시사점

- Action 8-10은 기존 OECD 이전가격지침을 대체 또는 보완하는 것으로서, 경제적 실질과 가치창출 기여도에 따라 다국적기업 그룹 내 구성원 간에 이익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핵심 권고사항으로 함
  - Action 8-10은 정상가격원칙에 대한 일반적인 지침 외에도 원자재거래, 이익분할방법의 적용, 무형자산거래, 저부가가치 그룹내부용역, 원가분담약정과 관련된 정상가격원칙을 추가 또는 보완함
- 우리나라는 기존 OECD 이전가격지침 개정에 합의한 국가로서 Action 8-10 권고사항의 이행을 위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음
- 미국과 유럽의 주요 국가들은 OECD의 BEPS프로젝트 최종보고서가 나오기 이전부터 자국 세법에 Action 8-10의 권고사항 중 일부를 이미 도입했던 것으로 확인됨
  - OECD의 BEPS프로젝트 최종보고서 발표 이후 호주와 중국에서 Action 8-10 권고사항을 자국 세법에 반영하기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
- 다국적기업 그룹 내부거래에서의 각 구성원의 수행 기능 및 부담 위험을 경제적 실질과 가치창출 기여도를 고려하여 재평가하고, 필요한 경우 그 결과에 따라 이전가격정책의 변경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
  - 이전가격 정책 변경 등으로 인해 향후 발생가능한 기업의 세부담 변화 등 영향에 대한 사전적 분석이 필요함
  - 또한 종전의 이전가격 정책에 따라 작성 또는 제출한 이전가격문서화 자료와 법인세 신고자료의 적정성이 위협받을 수 있는 가능성 및 과세위험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
  -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는 기능분석 결과가 Action 13 이전가격문서화 정보(마스터파일, 로컬파일, 국가별보고서)에도 일관되게 반영되어야 함
- 해외 진출국의 Action 8-10 관련 입법동향을 모니터링하고 변화하는 이전가격 과세환경에 준비 및 대응할 필요가 있음

■ Action 8-10의 권고사항 이행을 위해 기업의 행정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바, BEPS프로젝트를 전담하는 조직을 운용하거나 관련 인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음

- 경제적 실질과 가치창출 기여도에 따른 그룹 차원의 기능분석 및 이를 위한 그룹내 다른 기업과의 커뮤니케이션 강화, Action 8-10 관련 국내·외 입법동향 파악, Action 8-10 권고사항에 부합하는 이전가격문서화 관리 등 이전가격 관련 업무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

## 참 · 고 · 문 · 헌

기획재정부 보도자료, 「BEPS 프로젝트 조치별 대응 방향(III) 국제기준의 남용 방지」, 2015.11.30.  
 한국조세재정연구원, 「BEPS 이행 관련 국제동향」, 2016.

OECD, “Public Discussion Draft – BEPS Action 8–10 Revised Guidance on Profit Splits,” 2016.07  
 \_\_\_\_\_, *Aligning Transfer Pricing Outcomes with Value Creation, Action 8–10 – 2015 Final Report*,  
 OECD/G20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Project, OECD Publishing, Paris, 2015.

중국 국가세무총국, 《特别纳税调整实施办法》征求意见, 2015.10.

호주 국세청, [www.ato.gov.au](http://www.ato.gov.au)

OECD, [www.oecd.org](http://www.oecd.org)

KPMG, [www.kpmg.com](http://www.kpmg.com)

IBFD, [www.ibfd.org](http://www.ibfd.org)

정상가격 산출과 가치창출의  
연계 관련 BEPS프로젝트 주요  
권고사항 및 국내외 입법동향